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80
----------	------

발의연월일 : 2017. 4. 4.

발의자 : 전현희 · 임종성 · 조정식

기동민 · 서영교 · 김경진

윤관석 · 윤소하 · 김정우

김상희 · 박주민 · 박홍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1월 4일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사항에 녹색성장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시책 평가 사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생 략) <p>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 단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 7. (생 략)</p> <p><u><신 설></u></p> <p>8. (생 략)</p> <p>④ ~ ⑥ (생 략)</p>	<p>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현행과 같음) <p>③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p> <p><u>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